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5,842,213	36,475,266
일반회계	994,111,522	29,823,346
특별회계	221,730,691	6,651,921
공기업특별회계	192,237,843	5,767,135
상수도사업	88,778,983	2,663,369
하수도사업	103,458,860	3,103,766
기타특별회계	29,492,848	884,785
교통사업 특별회계	19,972,236	599,16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80,712	41,4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22,809	93,684
대지보상 특별회계	1,712,957	51,389
기반시설 특별회계	209,399	6,282
수질개선 특별회계	3,094,735	92,8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55,32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